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자격 차등화 안내

(드론자격시험센터 031-645-2100)

□ 사업배경

○ 드론 성능이 높아지고 국민생활 속 드론 활용 증가에 따라 기존 자격 체계 개선이 요구되어 사업용 대형 드론에만 적용했던 조종자격을 성능과 위험도 기준 4단계로 분류하여 관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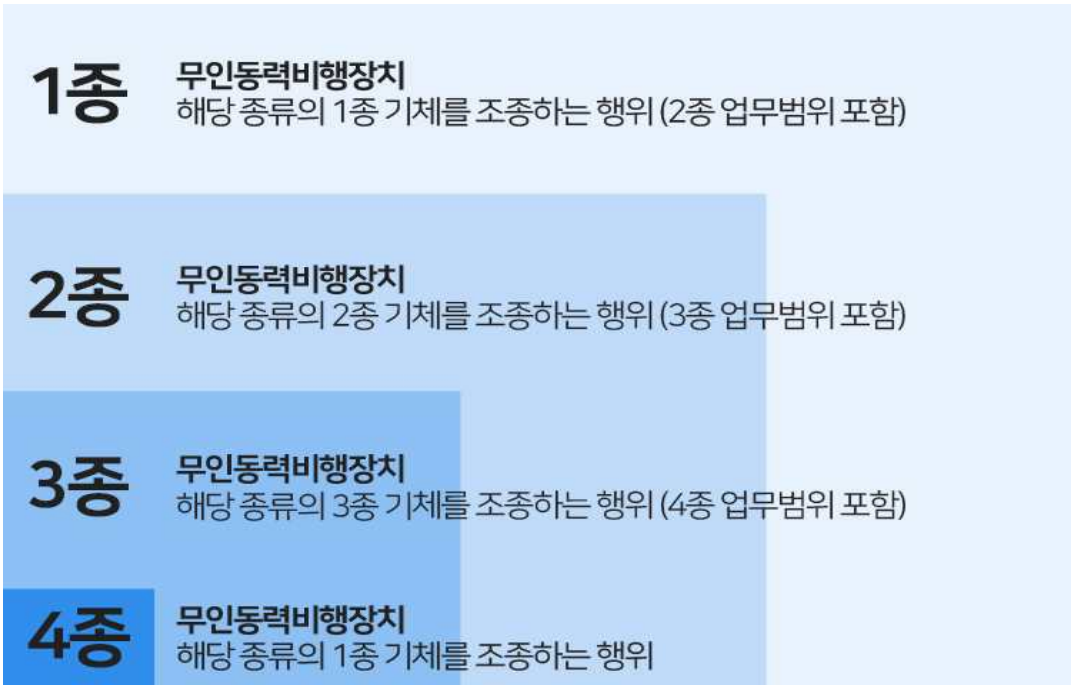
□ 관련법령

○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306조(초경량비행장치의 조종자 증명 등)

구분	개정 전	개정 후
분류 기준 (무인동력비행장치* 공통)	▸ 무게기준(자체중량) -12kg 초과 150kg 이하	▸ 무게기준(최대이륙중량) -1종 : 25kg 초과 자체중량 150kg 이하 -2종 : 7kg 초과 25kg 이하 -3종 : 2kg 초과 7kg 이하 -4종 : 250g 초과 2kg 이하
자격증명 필요여부	▸ 사업용 - 필요 ▸ 비사업용 - 불필요	▸ 사업용 - 필요 ▸ 비사업용 - 필요

* 무인동력비행장치 : 무인비행기, 무인헬리콥터, 무인멀티콥터

□ 자격증명에 따른 업무 범위



□ 자격 취득 기준

구분	비행경력	학과	실기	온라인 교육
1종	1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**20시간** (2종 자격 취득자 5시간, 3종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)	○	○	×
2종	1종 또는 2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**10시간** (3종 자격 취득자 3시간 이내에서 인정)		○	
3종	1종 또는 2종 또는 3종 기체를 조종한 시간 **6시간**		×	
4종	×	×	×	○

*** 학과시험의 경우, 과목/범위/난이도 동일**

※ 온라인교육(4종만 해당)

- 온라인교육 6시간(비용무료)으로 대체되며, '21.2.22(월)부터 항공교육 훈련포털(https://www.kaa.atims.kr)에서 수강가능